

## 광명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

제정 2025. 12. 19 조례 제3347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광명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생활체육”이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.
- “생활체육지도자”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광명시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5조(실태조사)** 시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**제6조(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)**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
-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사업
-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
-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7조(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)**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
-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
## 광명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

3.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·연구

4.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8조(지원)**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## 부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(다른 조례의 개정)** 「광명시 체육진흥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